

미 특허상표청 수수료 개정안 하원 통과

D 하원은 지난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 수수료 현대화법(U.S. Patent and Trademark Fee Modernization Act (H.R.1561)”을 찬성 379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특허상표청(USPTO)은 품질 지향, 높은 생산성, 비용절감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정된 5개년 21세기 전략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전략 계획의 시행은 200년 역사의 미국 특허제도에 중요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미 하원 법사위원회 의원들의 비전과 동 법안에 대한 노고가 없었다면, PTO는 품질 보장과 특허상표 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Jon Dudas 특허청장 서리는 말하였다. H.R. 1561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원으로, PTO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혁신가들에게 시의적절하고 믿을만한 지재권 보호를 보장해 주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H.R. 1561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정된 수수료 징수액이 실행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특허청장이 사용자들에게 수수료 수입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적립 기금(reserve fund)” 창설

이는 PTO 세입을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에 지출

하는 관행(수수료 수입의 전용)을 중단하게 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감독권을 재무부에 남겨두게 하는 절충안이다.

심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업적 기관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시행

시범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만 제한하며, 이에 관한 업무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타 : “small entities”로 정의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모든 조사 비용의 50% 감면,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업적 기관의 조사 금지, 재정적 이해관계 혹은 다른 갈등관계가 걸려있는 상업적 기관의 조사 업무 금지, 6년 후 조사 비용의 상한액 설정, small entities에 대한 수수료 체계의 효과에 관하여 PTO와 중소기업청(SBA)의 공동 연구 요구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수수료 개정안에 의하면 2004. 10. 1 혹은 법안 제정일 중 늦은 날짜부터 수수료가 15~25% 인상될 것이다.

유럽위원회, 공동체 특허법원 설립제안

O 유럽위원회는 공동체 특허법원 (Community Patent Court)의 설립에 대한 2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제안은 유럽재판소(ECJ : Court of Justice)에 침해와 특허 유효성과 관련된 특정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공동체 특허 법원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다.

제안된 특허법원은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임명하는 7명의 판사로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판사는 ECJ를 대신하여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공동체 특허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유럽 재판소의 궁극적인 재판관할권 하에서 단독의 공동체 특허 법원이 필요하면, 이는 EU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고 Frits Bolkestein EU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위원장은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작년 원칙에 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료 이사회가 동 제안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법원에 대한 합의는 공동체 특허 규정의 최종 채택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유럽 기업들은 최소한의 관료주의와 최대한의 법적 확실성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 유럽에 걸친 특허 보호에 접근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열망하여 왔다고 Bolkestein 위원장은 말하였다.

유럽 특허청(EPO)가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은 개별 회원국가에만 미치는 국내 특허 혹은

유럽 특허에 대한 분쟁에 대한 판결은 현재로 각기 회원국의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다.

특허 침해 혹은 특허의 무효 주장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국가의 법원을

방문해야만 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듈다.

또한 각기 다른 회원국의 법원은 특허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양립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단일의 소송 절차 규칙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모순들을 종결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소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특허법원의 정당화 논리이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